

전남 기초의회 회기일수 최대 40일 차이

■전남 기초의회 회기 및 의정비 현황
(단위:일, 만원)

| 의회 | 회기 | 의정비 | | |
|-----|-----|--------------------|-------------|--------------|
| | | 합계(A+B) 국외여비 제외 | 월정 수당(A) | 의정 활동비(B) |
| 목포시 | 90 | 3,649 | 2,329 | 1,320 |
| 여주시 | 120 | 3,575 | 2,255 | 1,320 |
| 순천시 | 90 | 3,461 | 2,141 | 1,320 |
| 나주시 | 90 | 3,324 | 2,004 | 1,320 |
| 광양시 | 120 | 3,672 | 2,352 | 1,320 |
| 담양군 | 90 | 3,308 | 1,988 | 1,320 |
| 곡성군 | 100 | 3,050 | 1,730 | 1,320 |
| 구례군 | 80 | 3,182 | 1,862 | 1,320 |
| 고흥군 | 90 | 3,190 | 1,870 | 1,320 |
| 보성군 | 100 | 3,324 | 2,004 | 1,320 |
| 화순군 | 90 | 3,353 | 2,033 | 1,320 |
| 장흥군 | 80 | 3,325 | 2,005 | 1,320 |
| 강진군 | 80 | 3,242 | 1,922 | 1,320 |
| 해남군 | 90 | 3,254 | 1,934 | 1,320 |
| 영암군 | 90 | 3,459 | 2,139 | 1,320 |
| 무안군 | 110 | 3,228 | 1,908 | 1,320 |
| 함평군 | 90 | 3,162 | 1,842 | 1,320 |
| 영광군 | 90 | 3,380 | 2,060 | 1,320 |
| 장성군 | 80 | 3,150 | 1,830 | 1,320 |
| 완도군 | 80 | 3,150 | 1,830 | 1,320 |
| 진도군 | 80 | 3,017 | 1,697 | 1,320 |
| 신안군 | 110 | 3,317 | 1,997 | 1,320 |

최소 80일~최대 120일...의정비 최대 655만원 차이

장흥군의회 회기일수 80일에 연 월정수당 2005만원

‘회기일수 110일’ 무안군의회보다 97만원 더 받아

전남지역 기초의회 회기 일수가 천차만 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별로 최소 80일에서 최대 120일이다. 무려 40일, 1.5배 격차가 나고 있다. 의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의정비 또한 천차만별이다. 월정수당만 놓고보면 연 1697만원에서 2352만원까지로, 같은 기초의원이지만 의회별로 최대 655만원(36.8%) 차이가 났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을 일괄 예고한 상황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지역별로 의회간 의정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광주일보가 전남지역 22개 기초의회 회기와 의정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초의회별 회기는 최소 8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로 나타났다.

여주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120일로 가장 많았다. 무안군의회와 신안군의회는

110일이었고, 곡성·보성군의회는 100일이었다.

목포·순천·나주 등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90일이었고, 구례·장흥·강진·장성·완도·진도 등 6개 군의회는 80일이었다.

기초의회별로 회기 일수가 많게는 40일 차이가 났다. 장흥군의회 등 80일에 그친 의회와 가장 길게 회기를 여는 여수·광양시의회는 1.5배 차이가 났다.

의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의정비(월정수당)도 격각이었다.

진도군의회는 연간 월정수당이 1697만원에 그친데 반해 광양시의회는 2352만원이었다. 물론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정수당과 회기 일수를 대비하면 ‘일하는 의회’와 ‘노는 의회’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순 계산하면 장흥군의회는 회기 일수 80일에 연 월정수당이 2005만원이다. 반

면 무안군의회는 회기일수가 110일인데도 월정수당은 1908만원을 받고 있다. 무안군의원들이 의정 관련 회기는 1.3배 더 참여하면서도 봉급은 97만원 덜 받고 있는 셈이다.

지방정가에서는 천차만별인 기초의회 회기 일수를 의정활동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기 일수를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의정활동을 감안한 과학적 회기일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비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상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월급(월정수당)을 의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지방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하지만 전남만 하더라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데 이를 도외시한채 지역별로 알아서 의원들 스스로 월급을 책정하라고 한다면 지방정치마저 빈익빈 부익부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책갈피로 만든 컵 독서의 달을 맞아 4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문화사랑방에서 열린 '반짝반짝 컵라이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부들이 강사와 함께 책갈피를 이용해 일회용컵을 예쁘게 꾸미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화해·치유재단 발족 2년만에 해산하나 부처간 협의... '日 출연금' 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발족 2년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도로 지난 3일부터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가 재단의 존치와 해산 사이에서 결단의 압박을 받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아직 재단에 대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지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조속히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단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연내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단 관련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단은 갈림길에 섰다. 여기에서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하지만 정부가 재단 해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재단을 해산하면 일본 측은 사실상의 위안부 합의 파기 수순으로 받아들여 강박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비취 위안부 합의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일본 정부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였다. /연합뉴스

본사인사

- ▲김종만 : 문화사업본부장
- ▲김미은 : 편집부국장 겸 문화부장
- ▲송기동 : 편집부국장 겸 예향부장
- ▲정숙진 : 업무국부국장 겸 시판·지방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왔다.
- ▲윤순호 : 경영지원국 출판부 부국장 (9월 5일자)

北 9·9절 맞아 항공편 늘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 등 대대적인 9·9절 기념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북한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손님맞이를 위해 임시 항공편을 대폭 증편했다.

4일 중국 항공 업계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오는 6~8일까지 기존 정규편 외 베이징발 평양행 임시 항공편 6편을 추가로 운항한다.

고려항공은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9·9절 사흘 전인 6일에는 기존 정기편인 오후 2시 외에 날 12시, 오후 4시, 오후 7시 임시 항공편을 운항한다. 또 7일에는 오전 11시 30분 임시편을 운항하고, 기념식 전날인 8일에도 오전 7시 50분, 오후 7시 추가로 항공편을 배정할 계획이다.

임시 항공편의 증편 규모로 미뤄 이번 9·9절 기념식은 최근 북한이 외부에 공개한 행사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항공업계 관계자는 "북한은 9·9절을 맞아 열병식과 마스게임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고려항공이 9·9절 행사를 취재하는 외신 취재진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기념식에 참석하는 단체 등이 대거 평양을 찾을 것에 대비해 임시 항공편을 대폭 늘린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북한 고려항공 수속 데스크 앞에 외국인 승객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고 있다. 고려항공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앞두고 항공 수요가 늘어나자 6~8일 임시 항공편 6대를 추가 운항하는 등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DML 남쪽 지뢰 지대 '여의도 40배' 완전 제거까지 200년 걸린다

군사분계선(DML) 남쪽에 있는 지뢰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고,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200년 가량 걸릴 것으로 군 관계자가 추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남측지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측 및 남측의 전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0여 배에 달한다"며 "전방사단의 11개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지뢰제거에 약 200년에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유해발굴 등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남북 공동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해 육군 본부내 '지뢰제거작전센터'(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구상하는 지뢰제거작전센터는 국방부와 연계해 지뢰제거 관련 계획을 수립·조정·통

제하면서 지뢰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이 관계자는 "지뢰가 많이 매설된 캄보디아와 태국, 크로아티아 등에도 지뢰제거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육군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DMZ 지뢰제거 작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 2018 - 1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추천 후보자 모집 공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천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2018년 9월 4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직무수행요건 별첨 * 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에서 다운로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9. 4.(화) ~ 2018. 9. 19.(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전달), FAX, 우편 접수 가능
(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우편, 방문(전달)접수
우) 59713 여수시 문수로 106, 8층(문수동, 엘레나호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이메일 접수처 : joker1124@nate.com
- FAX 접수 : 061-662-8221
- * 이메일, FAX, 우편접수시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061-662-8219

7.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방 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심사
- 일 정 : 접수마감 후 5일 이내
- 합격자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개별 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일 정 : 서류심사 합격통보 시 면접심사 일정 통보
다. 최종 추천 후보자 발표 : 추천 후보자 개별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자율양식)
※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5매 이상일 경우 요약서 첨부)
라. 자기소개서 1부(자율양식)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관련증명서(경력, 재직, 자격증 등) 각 1부
※ 지원서에 명시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기타사항

- 가. 응모자 수가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재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반환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62-8219)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9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6.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7.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